

의안번호	2220397
의 퇴 인	임종득의원
회 답 일	2026.9.9.
추계번호	26C3901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0조제2항 (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)	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.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.</u> 1.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소변,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2.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에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3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	의무규정
2	안 제51조의9 신설(동료상담가 양성 및 활동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상담가(마약류 중독자였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양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(제1항 신설)	재량규정
		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.(제2항 신설)	
		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동료상담가에게 수료증을 배부하고,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.(제3항 신설)	의무규정
		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상담가 양성 및 보수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상담가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(제4항 신설)	재량규정
		그 밖에 동료상담가 양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(제5항 신설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0조제2항(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51조의9 신설(동료상담가 양성 및 활동지원)	

2. 상세 사유

□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(안 제40조제2항)

-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보호기관에서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데 드는 비용 전부를 지원할 경우, 마약류 사용 및 중독 여부 판별에 필요한 기기 및 장비의 구입과 유지·보수에 드는 비용,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고용에 따른 인건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기운영 중으로 필요 기기, 장비, 인력 등이 대부분 갖추어져 있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만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게 되는 시설 및 인력에 대한 비용의 범위, 지원 기준, 재원 분담 비율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현시점에 개정안 시행의 순증분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－ 참고로,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 33개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([참고자료]에서 확인)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비(9억원, 11개소), 성과금(3억원, 선정 예정), 환경개선금(5억원, 선정 예정)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

□ 동료상담가 양성 및 활동지원(안 제51조의9 신설)

-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하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이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- 그러나 동료상담가 양성 교육훈련의 내용, 대상자 규모, 활동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계획, 재원 분담비율은 불확정적이므로 현시점에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다만,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‘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’ 사업이 시행 중이며, 2026년 157백만원¹⁾이 편성되었고, ‘마약류 중독 치료 전문인력 양성 및 개발’ 사업에 150백만원, 식품의약품안전처 ‘마약류 중독 예방·재활 전문 인력 교육 및 식약처장 인증과정 운영’에 490백만원이 편성됨

□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소임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소임	02-6788-4742	soimlee@assembly.go.kr

1) (산출) 593,544원 x 88명(개소) x 6개월 x 50%(보조율) = 157백만원

[참고자료]

[참고 표 1]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: 2026년 3월

지역	병원명	지정병상수(개)
서울	은평구	서울특별시 은평병원
	광진구	국립정신건강센터*
부산	연제구	부산의료원
	사상구	부산시립정신병원
대구	서구	대구의료원
	동구	대동병원*
인천	동구	인천광역시의료원
	서구	인천참사랑병원*
광주	광산구	광주시립정신병원
	서구	다사랑병원
	북구	천주의성요한병원
대전	중구	참다남병원*
	서구	마인드병원
울산	남구	마더스병원
경기	의정부시	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
	용인시	용인정신병원
	용인시	경기도립정신병원*
	의왕시	계요병원
	수원시	아주편한병원
	이천시	이천소망병원
강원	원주시	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*
	춘천시	국립춘천병원
충북	청주시	주사랑병원
충남	공주시	국립공주병
전북	익산시	원광대학교병원*
	김제시	신세계병원
	완주군	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
전남	나주시	국립나주병원
경북	포항시	포항의료원
경남	창녕군	국립부곡병원*
	양산시	양산병원
	김해시	한사랑병원
제주	제주시	연강참병원*

주: 별표(*)는 권역 치료보호기관

자료: 보건복지부